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대처

KOREAN

귀하에게 가정폭력명령 (Family Violence Order, FVO), 개인보호명령(Personal Protection Order, PPO) 또는 (직장 내) 개인보호명령(Personal Protection (Workplace) Order, WPO)에 대한 신청서 사본이 “송달”(제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신의 안전이 걱정돼서 귀하를 대상으로 보호명령을 요청한 것입니다.

귀하가 받은 신청서에는 “신청자 (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주장과 신청자가 귀하에게 부과하기를 원하는 조건이 나열됩니다.

명령은 귀하에 대해서 신청자에게 접근 또는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귀하에게는 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귀하가 또한 임시명령 사본을 받은 경우

법원은 최종명령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명령(interim order)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령은 이 때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최종명령(final order)이 송달되거나 임시명령이 기각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시명령은 귀하가 지켜야만하는 많은 조건을 부과합니다. 해당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명령의 조건과 그 기간은 명령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사항 또한 명령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엔 어떤일이 있습니까?

임시명령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이 특정 날짜와 시간에 진술심리(conference)를 위해 법원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최종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면, 그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귀하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시명령인 경우:

임시명령과 신청서 뿐만 아니라, 임시명령 “승인 사본(endorsement copy)”과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심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날짜와 시간이 적힌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임시명령이 최종명령이 되는데 동의한다면, 그 승인 사본을 기입하여 법원에 반송하십시오. 반송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승인 사본을 받은 당일에 임시명령이 최종명령으로 전환되어 신청서에 특정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법원이 진술심리가 있는 날짜 이전에 승인 사본을 받으면, 귀하께서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승인 사본을 반송하지 않으면, 진술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 받은 날짜와 시간에 진술심리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명령은 귀하가 불참석하더라도 최종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귀하께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 동반할 소송후견인(litigation guardian)을 둘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14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소송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후견인은 법원에서 귀하를 도울 수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예를 들어, 귀하의 부모 또는 귀하가 신임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입니다. 부모나 후견인 또는 귀하를 법원에서 도울 수 있는 다른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02 6207 0707** 번으로 Public Advocate (공익법무관)에게 전화해야합니다.

진술심리가 있는 날에는 어떤일이 있습니까?

귀하께서 진술심리를 위해 도착했다는 것을 프론트 카운터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합니다. 진술심리를 진행할 부등록관이 귀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진술심리 중, 귀하와 신청인은 다른 방에 있게 됩니다. 귀하를 지원하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부등록관이 귀하와 신청인이 결정사항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Legal Aid ACT(ACT 법률구조) 직원이 법원에 있습니다. 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정폭력위기서비스(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 - DVCS) 직원 또한 법원에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카운터에 있는 직원 또는 부등록관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능한 진술심리 결과

- 귀하와 신청인이 최종명령에 동의합니다. 명령은 경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 귀하와 신청인이 공약에 동의합니다. 공약이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공약이 깨지더라도, 경찰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치안판사 앞에서의 심의를 위해 귀하의 사안을 목록에 올릴 것입니다.
- 귀하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귀하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최종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또는 귀하에게 다른 날에 법원에 다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치안판사가 최종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법원에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이 있는 경우, 귀하는 그들에게 심의가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나와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문자처럼,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법정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신청자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으면,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만약 해당 사안이 법원 심의를 위한 목록에 오른다면, 임시명령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법원이 임시명령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임시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임시명령이 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임시명령 지속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정해진 진술심리일에 치안판사에 의해 심의됩니다.

명령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개인보호명령(PPO)은 최고 12개월 그리고 가정폭력명령(FVO)은 최고 24개월 또는 특별한 경우에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종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최종명령 연장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귀하에 반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까?

귀하가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보호명령은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명령은 다른 주에서도 효력을 발휘합니까?

가정폭력명령은 호주와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호명령은 다른 주와 준주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주와 준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은 ACT와 위반이 일어나는 다른 주 또는 준주 모두에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전화번호

**응급라인
000**

**Protection Unit ACT Magistrates
Court(ACT 치안법원, 보호유닛)
02 6205 4939**

**ACT Policing(ACT 치안유지)
131 444**

**Victim Support ACT
(ACT 범죄 피해자 지원)
1800 822 272**

**Legal Aid ACT(ACT 법률구조)
02 6207 1874 또는 1300 654 314**

**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 –
DVCS(가정폭력위기서비스)
02 6280 0900**

정보 이용 서비스

-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13 14 50** 번으로 TIS에 전화하거나, **www.tisnational.gov.au**에 방문하십시오.
- 귀하가 안들리거나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어서 전신타자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13 36 77** 번으로 전화해서 **02 6205 0000** 번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 Speak and Listen 사용자들은 **1300 555 727** 번으로 전화해서 **02 6205 0000** 번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 큰 글자로 된 이 문서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법원 지원 담당 직원에게 **02 6205 032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을 대신할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진행
또는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